

농림부고시 제 2009-10호

가축계열화사업자 및 확인서 발급요령 개정

농림부

가축계열화사업자 및 확인서 발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계열화"라 함은 가축의 생산 또는 사육, 사료공급·가공 또는 유통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경영활동을 말한다.
2. "가축계열화사업자"라 함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하 "농민"이라 한다)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계열화의 형태) 가축계열화의 사업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직계열화 :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
2. 수평계열화 :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
3. 혼합계열화 : 제1호의 수직계열화와 제2호의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

제4조(영세율 적용 가축계열화사업자)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는 제3조 각호의 1과 특례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계열화사업자 지정서 교부) ①특례규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농민과 체결한 가축계열화 또는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3. 계약 또는 위탁한 농민의 일반현황(주소, 전화번호, 가축사육규모, 축산시설현황, 전년도 영세울 적용 사료의 공급량 및 총가액) 1부
4.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주업법인임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서류(위탁 또는 계약한 농민 중에 축산업 주업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 형태의 설명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 교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가축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6조(지정서 재교부) ①가축계열화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현황 관리)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매년의 상·하반기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가축계열화사업자확인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가축계열화사업자 확인서는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지정서로 본다.